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42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성원 · 유용원 · 김은혜
이현승 · 김선교 · 고동진
박충권 · 엄태영 · 김승수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

2조 제5호 바목, 제8조 제1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시범사업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바목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신 설> 6. · 7. (생 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방위사업법」 제17조의 <u>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u> 6. · 7. (현행과 같음)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u>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u>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 ----- -----. ----- ----- ----- ----- ----- <u>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u>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u>시범사업을</u> ----- ----- ----- -----

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 2. (생 략) ② ~ ⑨ (생 략)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